#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27

발의연월일: 2025. 3. 7.

발 의 자:임오경·한병도·이기헌

조계원 · 김윤덕 · 강유정

윤호중 • 민병덕 • 임광현

박수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 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 획 수립, 전통무예단체의 육성,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.

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절차,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 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#### 가. 정의(안 제2조)

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,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#### 나.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(안 제5조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,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## 다.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(안 제6조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·문화적·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.

## 라.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(안 제7조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,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현저히 낮아지거나 전통적·문화적·스포츠적 가치가 소멸하는 경

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.

마. 전통무예 교육 지원(안 제11조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무예 교육,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음.

바.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(안 제12조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내·국제대회, 전통 무예지도자 파견, 해외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.

사. 권한 등의 위임·위탁 신설(안 제13조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,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.

법률 제 호

#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

전통무예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 전통무예진흥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"전통무예"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(武)적 공법・기법・격투체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말한다.
- 2. "전통무예지도자"란 학교, 직장,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전통무예육성종목"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무예 종목으로서 국가 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·문화적·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것(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

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)으로,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.

- 제3조(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
  - 2.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 · 연구 등에 관한 사항
  - 3.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·양성에 관한 사항
  - 5.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
  - 6.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
  - 7. 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  - 8.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 ·보호 및 육성하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, 인력과 조직 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제5조(전통무예 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종목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·문화적·스포츠적 가치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- 제7조(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

지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.
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하려면 사전에 관련 전통무예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④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대한 고시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.
- 제8조(전통무예단체의 육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) ① 「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(유네스코)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(카테고리 2)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」의 이행을 장려하고,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(이하 "국제무예센터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  -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.
  -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

을 둔다.

-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, 등급, 자격기준, 연수,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전통무예 교육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·발전하기 위하여 교육,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·국제대회의 개최,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,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13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

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 ·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